

『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최기찬위원장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현재 근속연수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시의 적절하게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
-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, 그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
-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

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 요건과 대상 및 추천에 대해 규정하고, 모범공무원증 수여 및 수당지급, 선발된 공무원에 대한 기록부 작성·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본 조례안은 서울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포상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, 서울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